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



제 92 호

2018년5월15일(화)

여수시보

시정방침

- 1. 함께하는 소통시정
- 1. 활력있는 지역경제
- 1. 수준높은 교육복지
- 1. 앞서가는 해양관광
- 1. 걱정없는 안전사회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공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3 FAX) 659-5803

목 차

【고 시】

- 여수시 고시 제2018-151호 여수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고시 /3
- 여수시 고시 제2018-152호 공유수면 점용 사용 승인 고시 /5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18-1198호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장폐쇄) 공시송달 공고 의뢰 /6
- 여수시 공고 제2018-1199호 여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 열람공고 /7
- 여수시 공고 제2018-1207호 도로지정 공고(화양면 이목리 산146-3외) /11
- 여수시 공고 제2018-1212호 건설공사대장 미통보에 따른 시정명령 공고 /12

회 람									
--------	--	--	--	--	--	--	--	--	--

여수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여수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고시

여수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신청 건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전라남도 사무위임 규칙」제2조에 따라 여수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고시합니다.

2018. 5. .

여 수 시 장

1. 사업의 명칭: 연약지반 보강(재하성토)사업
2. 사업시행자 성명 주소
 - 가. 성 명: 롯데케미칼(주) 김교현, 허수영
 - 나. 주 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신천동, 롯데타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가. 사업의 목적: 기 준공된 확장단지 6BL에 재하성토(PDB공법, 개별압밀진공공법, 치환) 시행 후 지반 안정화를 시켜 공장 증설부지 조성
 - 나. 사업의 개요: 276,000m²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가. 위 치: 여수시 중흥동 1742번지
 - 나. 면 적: 276,000m²
5. 사업시행기간: 실시계획승인일 ~ 2018.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붙임참조
7.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 해당사항 없음
8. 국 . 공유지 관리처분계획: 해당사항 없음
9. 사업시행지역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해당사항 없음
10. 실시계획승인조건: 게재생략
11. 관계도서는 여수시 도시계획과(☎ 659-401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연번	위치	지 번	지 목	지 적 (㎡)	신청면적 (㎡)	소 유 자		비 고
						주 소	성 명	
계		1필지		453,799	276,000			
1	중흥동	1742	장	453,799	276,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 (신천동, 롯데타운)	롯데케미칼(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장 폐쇄) 공시송달(공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제3항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영업장폐쇄)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5일

여 수 시 장

1.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업종	업소명	대표자	영업장 소재지	위반사항	처분내용
건물위생관리업	심정기업(주)	이국*	여수시 시청로 63, 3층(학동)	사업자등록 폐업	영업소 폐쇄
피부미용업	네잎크로버	정선*	여수시 문수로 97, 3층(문수동)	사업자등록 폐업	영업소 폐쇄

2. 공고기간 : 2018. 5. 15. ~ 2018. 5. 31. (16일간)

3. 처분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3항 제2호

4. 처분내용 : 영업소 폐쇄

5. 유의사항

영업소 폐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을 청구(제기)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은 www.simpan.go.kr 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6. 문의처 : 여수시 보건소 식품위생과 숙박지도팀 ☎ 061)659-4386

여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 주민 등의 의견청취 열람공고

여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8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5.15.

여 수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가) 도로 결정 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67	15	국지 도로	62	중3-16 조화리201-4도	소2-749 조화리201-4도	일반 도로	울촌 초등학교	여고-22호 09.02.20	
변경	중로	3	가	12	국지 도로	62	중3-16 조화리201-4도	소2-749 조화리201-4도	일반 도로			폭원 축소
기정	중로	3	25	12	국지 도로	825	중3-16 조화리407-29전	소2-370 조화리88-6입	일반 도로		전고-104호 82.06.29	
변경	중로	3	25	12	국지 도로	504	중3-16 조화리201-4도	소2-750 조화리168-1도	일반 도로			연장 축소
기정	중로	3	88	12	국지 도로	1,320	대2-22 관기리693-3도	중3-79 관기리 산30입	일반 도로		여고-67호 09.05.13	
변경	중로	3	88	12	국지 도로	390	대2-22 관기리693-3도	관기리 125전	일반 도로			
변경	중로	3	나	12	국지 도로	179	관기리 173도	중3-79 관기리 산30입	일반 도로			
기정	중로	3	91	12	국지 도로	80	대2-22 관기리 524전	중3-88 관기리 산71입	일반 도로		여고-67호 09.05.13	
변경	중로	3	91	12	국지 도로	49	대2-22 관기리 524전	중3-88 관기리 산71입	일반 도로			
기정	소로	1	132	10	국지 도로	598	대2-7 현천리 187-13전	자연취락지구 45 현천리 118-1답	일반 도로			
변경	소로	2	가	7~9	국지 도로	598	대2-7 현천리 187-13전	자연취락지구 45 현천리 118-1답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744	8	국지 도로	278	조화리 125-8답	중3-17 조화리 137-5도	일반 도로		전고-313호 97.12.09	
변경	소로	2	744	8	국지 도로	131	조화리 125-8답	소2-742 조화리 125-8답	일반 도로			
폐지	소로	2	761	8	국지 도로	113	대2-7 사곡리 1019-7도	자연취락지구 17 사곡리 824답	일반 도로		전고-241호 01.12.31	
기정	소로	2	897	8	국지 도로	695	소2-1012 신덕동 132대	신덕동 588-4도	일반 도로		여고-1호 00.01.13	
변경	소로	2	897	8	국지 도로	849	소2-1012 신덕동 132대	신덕동 587-4도	일반 도로			연장 증가
폐지	소로	2	970	8	국지 도로	210	대3-15 우두리 664-7대	소2-958 우두리 산388-9입	일반 도로		건고-10호 90.01.22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폐지	소로	2	1056	8	국지 도로	280	중3-91 관기리524전	중3-88 관기리 168-1전	일반 도로		여고-67호 09.05.13	
기정	소로	2	1449	8~10	국지 도로	162	광3-1 선원동1-1도	중3-120 선원동439-5도	일반 도로		여고-38호 16.2.25	
변경	소로	3	가	5~8	국지 도로	162	광3-1 선원동1-1도	중3-120 선원동439-5도	일반 도로			폭원 축소
폐지	소로	3	19	6	국지 도로	138	소3-23 동산동 214-1대	소3-22 동산동 328대	일반 도로		여고-67호 09.05.13	
폐지	소로	3	21	6	국지 도로	41	중3-1 동산동 359대	소3-19 동산동 352대	일반 도로		여고-67호 09.05.13	
기정	소로	3	344	6	국지 도로	173	소3-261 문수동 694-8대	소2-391 문수동 754-1대	일반 도로			
변경	소로	3	344	6	국지 도로	173	소3-261 문수동 694-8대	소2-391 문수동 754-1대	일반 도로			선형 조정

■ 도로 결정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중로 2-167	중로 3-가	· 도로 일부 구간 폭원 축소 · B= 15m → 12m	· 실제 개설이 완료된 도로 현황에 맞게 도로 폭원 조정
중로 3-25	중로 3-25	· 도로 일부 구간 연장 축소 · L= 825m → 504m 감)321m	· 예산부족으로 집행가능성이 낮은 중로3-25호선의 일부 구간 폐지
중로 3-88	중로 3-88	· 도로 일부 구간 폐지 · L= 1,320m → 390m 감)930m	· 예산부족으로 집행가능성이 낮은 중로3-88호선의 일부 구간 폐지
	중로 3-나	· 중로3-88호선의 폐지에 따라 일부 구간 노선 분리 (신규 노선명 부여) · B=12m, L=179m	· 중로3-88호선의 일부 구간 폐지에 따라 신규 노선명 부여
중로 3-91	중로 3-91	· 도로 일부 구간 연장 축소 · L= 80m → 49m 감)31m	· 중로3-88호선의 일부구간 폐지에 따라 연결도로 연장 축소
소로 1-132	소로 2-가	· 도로 일부 구간 폭원 축소 · B= 10m → 7~9m	· 현재 구거를 복개하여 도로로 이용중인 현황에 맞게 폭원 축소 및 선형 조정
소로 2-744	소로 2-744	· 도로 일부 구간 연장 축소 · L= 278m → 131m 감)147m	· 예산부족으로 집행가능성이 낮은 소로2-744호선의 일부 구간 폐지
소로 2-761	-	· 도로 폐지 · B= 8m, L= 113m	· 예산부족으로 집행가능성이 낮은 소로2-761호선 폐지
소로 2-897	소로 2-897	· 도로 연장 증가 · L= 695m → 849m 증)154m	· 신덕동 588-4번지 일원의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을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
소로 2-970	-	· 도로 폐지 · B= 8m, L= 210m	· 예산부족으로 집행가능성이 낮은 소로2-970호선 폐지
소로 2-1056	-	· 도로 폐지 · B= 8m, L= 280m	· 중로3-88호선의 일부 구간 폐지에 따라 연결도로 폐지
소로 3-19	-	· 도로 폐지 · B= 6m, L= 138m	· 예산부족으로 집행가능성이 낮은 소로3-19호선 폐지
소로 3-21	-	· 도로 폐지 · B= 6m, L= 41m	· 예산부족으로 집행가능성이 낮은 소로3-21호선 폐지
소로 3-344	소로 3-344	· 도로 선형 조정	· 지적재조사 결과반영에 따른 도로 선형 조정

(2) 주차장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9	노외주차장	덕충동 산872-2 일원	849	감)849	-	전고-327호 93.12.24	

■ 주차장 결정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9	노외주차장	· 구 분 : 폐지 · 면 적 : 849㎡	· 예산부족으로 집행가능성이 낮은 주차장 폐지

(3) 철도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폐지	3	철도	일반철도	울촌1공단 남측지구계	울촌역	울촌공단	4,255	146,700		

■ 철도 결정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	철도	· 구 분 : 폐지 · 연 장 : 4,255m · 면 적 : 146,700㎡	· 개설계획이 없는 도시계획시설 폐지

나. 공간시설

(1) 공원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06	종포공원	문화공원	중앙동 277-2번지 일대	1,629	증)31	1,660	여고-287호 16.11.10	
변경	207	돌산대교 제1공원	소공원	돌산읍 우두리 799-157번지 일대	1,830	감)161	1,669	여고-287호 16.11.10	

■ 공원 결정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06	종포공원	· 구 분 : 변경 · 시설의 종류 : 소공원 → 문화공원 · 면 적 : 1,629㎡ → 1,660㎡ 증)31㎡	· 종포해양공원과 연계한 다양한 시설배치를 위해 문화공원으로 변경
207	돌산대교 제1공원	· 구 분 : 변경 · 면 적 : 1,830㎡ → 1,669㎡ 감)161㎡	· 실시설계 현황측량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공원 구역 조정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1) 공공청사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39	공공청사	면사무소	화양면 나진리 471-1 일원	-	증)1,629	1,629		

■ 공공청사 결정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9	공공청사	· 구 분 : 신설 · 면 적 : 1,629㎡	· 화양면사무소 신축계획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로 결정

(2) 학교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4	학교	중앙여중, 고교	덕충동 1635 일원	51,465	감)6,835	44,630	전고-141호 78.08.10	

■ 학교 결정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	학교	· 구 분 : 변경 · 면 적 : 51,465㎡ → 44,630㎡ 감)6,835㎡	· 개인사유지 제척에 따른 학교 면적 감소

2. 여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도면: 게재 생략
3. 열람장소: 여수시청 도시계획과
4. 공고기간: 2018. 5.15. ~ 2018. 5.29.(14일간)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yeosu.go.kr/>) 게재되어 있으며, 도시계획과(☎ 061-659-40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지정 공고

여수시 화양면 이목리 산146-3번지 상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1. 도로지정 공고 내역/변경

도 로 위 치	도로길이 (m)	도로너비 (m)	도로면적 (㎡)	관련지번 및 이해 관계인 동의 여부	비 고
계	533.35	6-10	3,895	도로대장 참조 (허가민원과 비치)	
화양면 이목리 산146-3번지	426.38	6	2,843	"	
화양면 이목리 1180번지	13.8	10	132	"	
화양면 이목리 1181번지	11.6	6	80	"	
화양면 이목리 1176-2번지	53.07	10	564	"	
화양면 나진리 1175번지	5.5	10	51	"	
화양면 나진리 1174-1번지	23	10	225		

2. 관련도서 : 생략(여수시청 허가민원과에 비치)

3. 기타사항

가. 도로 지정과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청 허가민원과
(061-659-41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 5. 15.

여 수 시 장

건설공사대장 미 통보에 따른 시정명령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1조(시정명령 등) 제3호에 따라 시정명령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5일

여 수 시 장

1. 시정명령 대상 업체 : 불임
2. 시정명령일시 : 2018. 5.15.
3. 시정명령 이행기간 : 2018. 5.15. ~ 5.30.
4. 법 적 근 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시정명령) 제3호
5. 시정명령내용 : 건설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1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와 1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로부터 4천만 원 이상을 하도급 받은 건설업자는 도급·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시정명령 기일까지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6. 본 행정처분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시정명령 등의 보고)에 따라 건설산업정보시스템(<http://www.kiscon.net>)에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정명령 대상 업체

연번	상 호	대표자	처분업종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근거
1	(주)대승건설	배성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시정명령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3호
2	(주)송현기업	오재환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시정명령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3호